

인천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2708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원고 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서 2023.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3. 8. 1. 접수 제278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승계참가 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7. 21. E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연 14.2%, 지연손해금율 연 17.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나. E는 2023. 6. 2.부터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23. 8.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E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원리금 합계액은 2023. 8. 14. 기준 48,363,296원이다.

다. E는 2023. 7. 24. 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3. 8. 1. 접수 제27820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23. 11. 27. E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23. 12. 20.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E가 이를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4. 5. 24.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E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에 관해 판단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임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는 원고에 대하여 4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당시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관한 E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19년 그의 재산으로 매수하여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E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별지